

검 토 보 고 서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완석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0년 5월 29일

나. 회부일자 : 2020년 6월 1일

3. 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도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일원(밀레니엄타운 인근)
- 사업규모 : 1,891,574m²(약 57만평)
- 사업기간 : 2020년 ~ 2028년
- 총사업비 : 약 8,540억원(보상비 5,359억, 조성비 1,339억, 기타 1,842억)
- 사업목적 : 밀레니엄타운 확장 개발을 통한 청주 북부권 활성화 도모 및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나. 수익 분석(지방공기업평가원 자료)

구 분	재무성지수	경제성지수	비 고
NPV	8,385백만원	200,637백만원	(NPV > 0) → 경제적 타당성 확보
B/C Ratio	1,0127	1.0750	(B/C Ratio > 1) → 경제적 타당성 확보
IRR	5.04%	4.98%	(IRR > 할인율 4.5%) → 경제적 타당성 확보

5. 검토의견

가. 본 계획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충북개발공사가 신규 투자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도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절차상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여짐.

나. 이와 관련하여 공사가 제출한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검토한 결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위해 총 8,540억 원이 투자되며, 비용편익 분석결과는 1.0127 (경제성)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 입지적으로 대상지는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일원으로 약 5km지점내 청주공항, 오창IC가 입지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지 인근에 17번 국도와 제2~3 외곽순환도로가 있고, 대상지 북측으로는 충북선 철도가 있어 산업단지의 교통 접근성은 양호하다고 보여짐.

라. 또한, 대상지 주변 청주테크노폴리스, 청주일반산단지의 집적화,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보여짐.

- 마. 다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분석한 사업타당성 분석에 근거하여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도는 양호하나, 재무성과 정책성은 보통수준으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 바. 충북권 다수의 신규 사업단지로 인한 공급과잉 우려 및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업시행방법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요구되며, 충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다른 산업단지 (동충주 산업단지 용지비 27.3%, 음성 맹동 인곡 산업단지 용지비 29.2%, 제천 제3산업단지 보상비 19%)에 비해 넥스트폴리스의 용지비는 총사업비의 62.7%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지구 내 토지보상 등이 지연될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1. 관련법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8조의2(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 법 제6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사업을 말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